

보도 일시	2022. 10. 31.(월) 08:30	배포 일시	2022. 10. 31.(월) 08:30	
담당 부서 <총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	책임자	팀 장	박희정 (044-200-7241)
		담당자	주무관	배영주 (044-200-7242)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책임자	과 장	최호종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김기성 (044-201-2276)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남진 (043-719-1151)
		담당자	사무관	이종식 (043-719-1157)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홍성현 (044-200-5641)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 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분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번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소관부처)	주요사례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 제공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조리·판매·제공 행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3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 ▲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행위 ▲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판매 하는 행위
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통보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행위
8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업자 표시를 하는 행위